

부산지방법원 2022. 1. 20 선고 2021나40362(본소), 2021나40379(반소) 판결 [지체상금 청구의
소 · 공사대금]

전 문

원고(반소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A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든든

담당변호사 김해린

변 론 종 결 2021. 12. 2.

판 결 선 고 2022. 1. 20.

제1 심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 12. 9. 선고 2017가단218729(본소),

2017가단221411(반소) 판결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와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51,841,956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23.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244,404,3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24.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51,841,956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23.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1)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제1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나. 피고

제1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2). 피고는 원고에게 16,821,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23.부터 2020. 12. 9.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와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7쪽 제8행의 ‘전체적인 경위 등’을 ‘피고가 원고와 협의 없이 공사타절의사를 밝히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자재를 반출한 후 공사를 중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된 전체적인 경위 등’으로 고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며, 피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장병준, 판사 목명균, 판사 이순혁

1) 항소장 정정신청서의 ‘이 사건 소장 부분’은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오기로 보여 이를 위와 같이 정정한다.

2) 항소이유서 기재 반소 청구에 관한 피고의 주장 내용과 항소취지 제2항의 내용을 고려하면, 항소취지 변경신청서상의 변경된 항소취지 제1항은 위와 같이 정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여 이를 정정한다.